

접수번호	광고사전자율심의신청서				처리기간
01-01-P-1600311					7일
신청자명	(주)에이치쓰리(H3)	대표자	오원식	사업자등록번호	231-86-00030
신청자주소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로30번길 18, 2층			연락처	담당자명: 송봉진
					연락처: 010-8511-8225
					팩스: 031-767-8226
광고 상품명	덴탈매스미르치약	광고주명	(주)에이치쓰리	광고매체	홈쇼핑 (A안)
대행사명	(주)에이치쓰리	제작자명	(주)동일제약	심의구분	초심 O 수정심
검토의견					
첨부 광고물 광고적합 의견임.					
변경내용					

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중

심의의결	심의결정	광고적합	2016년 7월 28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
	심의번호	16-P1-07-4	
	기타		

※ 주의사항은 뒷장에 첨부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서식 제1호 뒷면] 본 광고사전검토폰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.

광고 이미지			
기타		면번호	2

심의의결	심의결정	광고적합	2016년 7월 28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
	심의번호	16-P1-07-4	
	기타		

※ 필증 사용시 주의사항

- 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② 원하실 경우,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 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<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전검토필 심의번호> 문구로 한정하며, 기구 로고 필요 시 사무처에 별도 문의바랍니다.
- ③ 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은 불허합니다.
- 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.
- ⑤ 필증을 위·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.
- 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(02-2144-4300/4304)로 연락 바랍니다.